

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

## 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서윤기 의원 외 42명

나. 의안번호 : 제1694호

다. 제출일자 : 2020. 7. 13.

라. 회부일자 : 2020. 7. 14.

## 2. 제안사유

-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(안 제9조의2제2항 신설).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### 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20. 7. 17. ~ 2020. 7. 24.

○ 제출의견 : 의견 없음

### 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

○ 서울시장(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) : 원안가결

○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인권영향평가 결과, 과태료 부과·징수절차중 이의신청 절차가 미비하여 구제권이 제약된다는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신설(안 제9조의2 제2항 신설)하고 그 절차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### 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인권영향평가<sup>1)</sup> 결과에 따라 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자치법규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 절차의 구제권 등과 관련한 근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

### 나. 검토의견

#### ■ 조례 개정 배경 등

-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2019년 서울시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(2019년 7월 1일 기준 860개)를 실시하여 인권영역별로 서울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전수조사한 바 있음
- 각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 점검표는 ‘차별 및 인권 침해 예방’, ‘기본권보장 및 권리의 구제’, ‘시민참여 보장’ 등 3개 분야에 대해 9개 평가항목으로 세분하였고, 동 점검표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였음

---

1)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8조(인권영향평가)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※ 참고 : 자치법규 전수조사 점검 기준

평가분야	평가항목
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	1) 차별적 용어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
	2) 편견이나 선입견에 근거한 대상 한정에 따른 차별
기본권 보장 및 권리의 구제	3) 입장 및 이용 제한 조항에 따른 문화권 제약
	4) 장애인의 문화권 제약
	5) 반환권 제약(공공시설 이용 시 반환조항 미비)
	6) 구제권 제약(과태료 부과징수 법적 근거, 구제절차)
시민참여 보장	7) 개인정보보호권 보장
	8)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참여권 및 알권리 보장 여부
	9) 시민의 공직활동 참여권 보장 및 위촉 해제 관련 차별적 조항

- 그 결과 869개 자치법규 중 62개 자치법규, 96개 조항에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되었고 이에 서울시 인권위원회<sup>2)</sup>는 지난 4월 인권영향평가 기준에 맞지 않는 62개 자치법규의 개정을 권고<sup>3)</sup> 하였음

■ 과태료 관련 조항 신설(안 제9조의2)

- 현행 조례 제9조의2<sup>4)</sup>는 관계법령<sup>5)</sup>에 따라 과태료 부과시 부과

2)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14조(설치) ①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·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(이하 "인권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 ② 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3.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, 정책에 대한 자문

3) '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알림 및 이행요청'\_ 인권담당관(2020. 4. 6.)

4) 「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」 제9조의2(과태료 부과·징수) 시장이 영 제105조 별표 7 중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5) 「도로법 시행령 시행령」 제105조(과태료 부과기준) 법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. 다만,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가목·나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기준에 대해 규정하고는 있지만 과태료 부과·징수와 관련된 이의 신청 절차 등은 명확한 규정이 정의되어 있지 않음

-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6)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동 개정조례는 이를 반영하여 제9조의2제2항 등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·징수와 이의신청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과태료와 관련한 사항들을 명확히 하여 시민들의 구제권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됨
  
- 다만, 동 개정조례안에서 신설하는 ‘이의신청’은 근거 법령인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서는 ‘이의제기’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용어의 일관성 측면에서 추후 수정될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임

---

6)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

제1조(목적)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·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

제20조(이의제기)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.